

	관사 관리 규정	문서번호	3-1-27		
		제정일	2014. 02. 03.		
		개정일			
		페이지	1/2	관리 부서	사무처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관사의 보호와 그 취득·임차 유지관리 및 운영 등(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사의 정의)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본 대학교 총장이 사용하기로 결정된 건물·대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 (관사의 구분) ① 관사는 공관 1종으로 한다.

② 공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총장에 한한다.

제4조 (관사 취득) 관사는 이사회 의결 후 필요에 의하여 취득 또는 임차를 할 수 있다.

제4조 (관리비) 관사 관리비는 경비부담 구분표에 의한다.

단 특별한 사항이 발생될 시 변경되어 질 수 있다.

제6조 (관리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 책임을 진다.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사를 보호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를 훼손 또는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3. 관사용 비품은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 그 보관 관리의 철저를 기하여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원상의 변경) 사용자는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관사를 증축 또는 철거하거나 구조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관사를 대여하거나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3. 관사의 정원수를 별채 또는 처분하거나 이식하는 행위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관사 관리 규정	문서번호	3-1-27		
		제정일	2014. 02. 03.		
		개정일			
		페이지	2/2	관리 부서	사무처

관사운영 경비부담 구분표

범례 ○ 교비 부담

X 사용자 부담

경비구분	시설구분	내역	공관	비고
가. 재산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1)기본시설비	○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 공작물 및 구조물의 시설 ○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 (보일러, 에어컨 등) ○ 통신가설, 수도, 조정시설	○ ○ ○ ○	
	2)유지관리비	○ 건물 유지 수선 ○ 화재보험료(필요시) ○ 보증금 및 월세, 부동산비, 법률비 단 보증금, 월세금은 이사회 의결 필요	○ ○ ○	
나. 기본장식물의 유지 관리에 따른 경비	1)비품구입 및 장식비	○ 책상, 의자, 컴퓨터 ○ 커튼 종류 ○ 침상류 ○ 비품수선 ○ 실생활에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	○ ○ ○ ○ ○	
다. 일상경상비	1)공공요금	○ 전기료, 수도료 ○ 전화사용료	X X	
	2)난방용 연료비	○ 보일러 및 난방경비	X	
	3)취사용 경비	○ 유류, 연탄, 가스	X	
	4)기타경비	○ 오물수거료, 각종 집기, 청소 및 위생용품, 다과류등	X	